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69호
**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
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제2023-563호(2023. 12. 21.)로 고시된 「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」에 대하여 ‘25년 제16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(2025.11.10.)’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변경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5일
서울특별시장
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
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
구분	위치	관리계획 요건	노후·불량건축물	비고
기준	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	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	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	-
현황		92,420.1㎡	전체: 450동 노후·불량: 292동(64.9%)	
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
가. 관리지역의 지정

1) 관리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	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	92,789.9㎡	감)369.8㎡	92,420.1㎡	-

2) 관리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	명칭	결정 내용	결정 사유
-	청룡동 153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	- 위치: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: 92,420.1㎡	법인소유의 잡종지인 1531-35번지, 국공유지의 학교용지 1531-38번지 제척

나. 토지이용계획(안)

1) 기정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92,789.9	100.0	
사업 추진 구역	소 계	31,828.5	34.3	
	A1	가로주택형 모아주택	14,601.0	15.7
	A2	가로주택형 모아주택	11,418.2	12.3
	A3	가로주택형 모아주택	5,809.3	6.3
사업 가능 구역	소 계	46,141.4	49.7	
	B1		0.9	
	B2		2.0	
	B3		1.4	
	B4		11.3	
	B5		13.3	
	B6		9.4	
	B7		11.4	
정비기반시설	도로	6,171.4	6.7	
	어린이공원	4,849.0	5.2	
사업추진구역 외 구역	종교시설	646.3	0.7	
	공동주택	3,153.3	3.4	

2) 변경

구 분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 계			92,420.1	100.0	-
사업 시행 구역	공동주택 용지	소계	18,230.9	19.8	-
		사업추진구역 A1(가로주택정비사업)	6,913.2	7.5	정비기반시설 도로 : 648.3㎡
		사업가능구역 B1(소규모재개발사업)	4,757.4	5.2	정비기반시설 도로 : 631.9㎡
		사업가능구역 B2(가로주택정비사업)	4,164.3	4.5	정비기반시설 도로 : 599.5㎡
		사업가능구역 B3(가로주택정비사업)	2,396.0	2.6	-
	정비 기반시설	도로	1,879.7	2.0	-
가능 구역 외	기반 시설	도로	14,892.0	16.1	소로 1-가, 2-가 도로 포함
		어린이공원	4,849.0	5.2	-
	자율정비 구역	대지(주택 등)	52,568.5	56.9	-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

다. 정비기반시설·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소로	3	-	6	국지	-	-	-	일반	-
변경	소로	1	가	6~11	국지	216	1529-64	1534-1	일반	-
기정	소로	3	-	6	국지	-	-	-	일반	-
변경	소로	1	나	11	국지	43	1528-4	1528-1	일반	-
기정	소로	3	-	4	국지	-	-	-	일반	-
기정	소로	3	-	6	국지	-	-	-	일반	-
변경	소로	2	가	8	국지	218	1529-33	929-21	일반	-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소로	3	-	4	국지	-	-	-	일반	-
변경	소로	3	가	6	국지	56	1535-34	1535-8	일반	-
기정	소로	3	-	4	국지	-	-	-	일반	-
변경	소로	3	나	4	국지	25	1569-13	1528-14	일반	-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※ 소로 1-가는 자율경비구역 사업시행 시 도로 폭 11m로 확폭할 것

※ 명기된 기정 도로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5조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.(도로 결정조서 없음)

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	소로 1-가	• 폭원변경(B=6m → 6~11m)	-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시설 도로번호 부여 - 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하여 진출입로 확보
소로 3-	소로 1-나	• 폭원변경(B=6m → 11m)	
소로 3-	소로 2-가	• 폭원변경(B=4, 6m → 8m)	
소로 3-	소로 3-가	• 폭원변경(B=4m → 6m)	
소로 3-	소로 3-나	• 도로 번호 시·종점 부여	

3) 공원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비안 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	봉천동 1530-14	1,661.1	-	1,661.1	1972.06.07. (서고126호)	-
기정	2	충효어린이공 원	어린이 공원	봉천동 1526-1	3,187.9		3,187.9	1979.12.20. (서고425호)	-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4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○ 공동이용시설 설치 기준

- 주요 보행통로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(권장시설) 조성
-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구역별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

구분	도면표시	시설유형	변경사유
권장 시설	A1	• 노유자시설(경로당 등), 작은도서관, 독서실, 문화센터 등 대단지 내 취약시설 설치 권장	•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하여 개방
	B1		
	B2		
	B3		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※ 공동이용시설의 적정면적, 세부용도, 운영계획 등은 개별 사업추진 시 협의하여 결정

※ 「서울시 주택조례」 제8조의4(주민공동시설) 100세대 ~ 1,000세대 기준 세대당 2.5㎡ X 1.25 이상 설치

※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법적 상한용적을 초과 가능, 용적을 산정 산식은 「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」에 따름

라. 교통계획(안)

구분	적용지역	계획내용
차량진출입 불허구간	• 싹고개로 • 장군봉길 • 장군봉5길	• 장군봉7길 • 장군봉15길 • 청룡8길
		•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보행연속성을 고려한 간선도로 일부 구간 설정 •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 교차로 가각부 설정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

1) 기정

도면표시	사업구역	위치	면적(㎡)	사업계획		비고
				시행자	추진단계	
A1	모아주택1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5 일대	2,457	조합	조합설립	-
A1	모아주택1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6 일대	5,424	조합(예정)	동의서 연번부여	-
A2	모아주택2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3-1 일대	2,396	조합(예정)	동의서 연번부여	-

도면표시	사업구역	위치	면적(㎡)	사업계획		비고
				시행자	추진단계	
A3	모아주택3구역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28 일대	3,049	조합(예정)	동의서 연번부여	-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2) 변경

구분		면적(㎡)			사업계획				
		계	공동주택용지	정비기반시설	토지등 소유자	기준 호수	시행자	추진 단계	최초 결정일
합계		20,110.6	18,230.9	1,879.7	247	387	-	-	-
A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7,561.5	6,913.2	648.3	124	129	조합	동의서 징구중	-
B1	사업가능구역1 (소규모재개발사업)	5,389.3	4,757.4	631.9	41	102	조합	동의서 징구중	-
B2	사업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4,763.8	4,164.3	599.5	32	106	조합	동의서 징구중	-
B3	사업가능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2,396.0	2,396.0	-	50	50	조합	동의서 징구중	-

※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및 가로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바. 기타(건축협정)에 관한 계획(안)

1) 건축협정 가능 구역 : 사업시행구역 적용

구분		위치	면적(㎡)	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(「건축법」 제77조의 13)	
도면표시 번호	사업구역			통합적용	원화적용
A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5 일대	7,561.5	- 대지의 조정(제42조) - 지하층의 설치(제53조) - 대지와 도로의 관계(제44조)	- 대지의 조정(제42조) - 건폐율(제55조) - 용적률(제56조) - 대지안의 공지(제58조) -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0조)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1조)
B1	사업가능구역1 (소규모재개발사업)	봉천동 1536 일대	5,389.3	- 건폐율(제55조) - 부설주차장의 설치(주차장법 제19조) 등	- 대지의 조정(제42조) - 건폐율(제55조) - 용적률(제56조) - 대지안의 공지(제58조) -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0조) -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1조)

구분		위치	면적(㎡)	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(「건축법」 제77조의 13)	
도면표시 번호	사업구역			통합적용	완화적용
B2	사업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3-1 일대	4,763.8		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사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(안)

1) 기정

구분	내용			비고
사업추진구역	건폐율	60% 이하		사업추진 구역 A1구역 ~ A3구역
	용적률	2종일반(7층)	기준 200% / 상한 250%	
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	
사업가능구역	건폐율	60% 이하		사업가능 구역 B1구역 ~ B7구역
	용적률	1종일반	기준 150% 이하	
		2종일반(7층)	기준 200% 이하	
	높이	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 높이		
사업추진구역 외 구역	건폐율	60% 이하		-
	용적률	2종일반(7층)	기준 200% 이하	
	높이	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 높이		

2) 변경

-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을 중심으로 밀도 계획 수립

구분		내용		비고
사업 시행 구역	사업추진구역 A1 사업가능구역 B1 사업가능구역 B2	건폐율	50% 이하	공동주택용지 제3종일반주거지역
		용적률	기준 250% / 상한 300%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(높이) 적용	
	사업가능구역 B3	건폐율	60% 이하	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
		용적률	기준 200% / 상한 250%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(높이) 적용	
자율경비구역		건폐율	제1종일반주거지역 : 60% 이하 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 : 60% 이하	-
		용적률	제1종일반주거지역 : 기준 150% 이하 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 : 기준 200% 이하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(높이) 적용	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※ 기준(상한)용적률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

※ 대상지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따른 높이 제한 적용지역으로 향후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높이제한 협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(사업구역 설정, 용도지역, 높이 등) 수립 가능하도록 함

※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규모(높이, 밀도 등)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

아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

1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건축선 계획(안)

구분	적용지역	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A1, B1, B2, B3, 자율정비구역	• 건축한계선 3~5m 적용 - 석고개로(주가로) • 건축한계선 3m 적용 - 보행중심가로(장군봉길, 석고개로11길) • 건축한계선 2m 적용 - 보행중심가로(장군봉7길, 장군봉1길, 남부순환로206길) - 사업시행구역 이면부(장군봉5길, 장군봉7길, 장군봉15길, 청룡8길)	• 가로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
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	근린생활시설 배치구간	• 배치구간 - 석고개로 • 권장용도 - 주택법 제2조 13, 14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-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-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,4호의 근린생활시설	•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
	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	• 배치구간 - 장군봉7길, 장군봉5길 • 권장시설 - 노유자시설(경로당 등), 작은도서관, 독서실, 문화센터 등 대상지 내 취약시설 • 관리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을 고려하여,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	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2) 건축물 용도 계획(안)

구분			계획 내용	비고
사업 시행 구역	A1 B1 B2 B3	유형	• 공동주택 용지(도로 제외)	-
		용도 허용용도	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• 「주택법」 제2조제13호, 제14호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• 「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4조 공동이용시설 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,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	

구분			계획 내용	비고
자율정비구역	용도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-
		허용용도	•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
		불허용도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자.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(안)

구분		위치	전용 면적	전체 세대수	임대주택			임대주택 인수예정자	비고
도면 표시 번호	사업구역				전체	기부 채납	매입		
합계				507	92	44	48	-	-
A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5 일대	49.8㎡	97	-	-	-	한국토지 주택공사,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	-
			59.9㎡	85	55	19	36		
			84.9㎡	24	-	-	-		
			소계	206	55	19	36		
B1	사업가능구역1 (소규모재개발사업)	봉천동 1529 일대	59.9㎡	76	6	6	-		-
			84.9㎡	55	6	6	-		
			소계	131	12	12	-		
B2	사업가능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28 일대	49.5㎡	20	-	-	-		-
			59.9㎡	33	13	13	-		
			84.9㎡	49	-	-	-		
			소계	102	13	13	-		
B3	사업가능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봉천동 1533 일대	49.6㎡	42	-	-	-		-
			59.9㎡	13	8	-	8		
			84.9㎡	13	4	-	4		
			소계	68	12	-	12		

※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

※ 상기의 세대수는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이 적용된 세대수로 세대수,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※ 개별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(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함)

차.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(안)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계		92,420.1	-	92,420.1	100.0	-
주거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8,888.0	-	8,888.0	9.6	-
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	83,532.1	감) 18,058.3	65,473.8	70.8	-
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,396.0	2,396.0	2.6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15,662.3	15,662.3	17.0	-

※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카.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

-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도시 경관,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, 안전한 가로환경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
- 「건축법」 제69조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, 「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(국토교통부 훈령 제1445호)」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 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(안)_서울특별시」에 준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권장

구분		면적(㎡)	결정 내용	결정 사유	비고
특별건축구역	A1	7,561.5	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	지역 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	-
	B1	5,389.3			
	B2	4,763.8			
	B3	2,396.0			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※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개별 사업시행자(조합 등) 등이 「건축법」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

다. 자율정비구역에 관한 계획(안)

1) 건축협정에 따른 공동개발

- 자율정비구역은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단독개발, 공동개발(건축협정),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

구분	내용
건축협정	• 「건축법」 제77조의4에 따른 지역 또는 구역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
대상구역	•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 내(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4 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)
건축협정 특례	• 「건축법」 제73조(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)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의 규정을 따름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2)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(안)

- 자율정비구역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시 정비기반시설 개선(안)
- 사업시행구역 외 자율정비구역에 대하여 향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, 모아타운 전체 관리계획과 연계된 도로 확폭, 건축한계선 등 기반시설 개선(안)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계획적·체계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함

구분	도면번호	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C4, C5, C7, C8, C9, C10, C11, C12	• 건축한계선 2m 적용 - 보행중심가로(장군봉7길, 장군봉1길, 남부순환로206길) - C12 썩고개로 이면부	도면 참조
	C1, C2, C3, C4, C6, C8, C11, C12	• 건축한계선 3m 적용 - 주요통학로 및 보행중심가로(장군봉길, 썩고개로11길) - C12 썩고개로	
	C13	• 건축한계선 5m 적용 - C13 썩고개로	
전면공지	전구역	• 가로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	도면

구분	도면번호	내용	비고
		보도부속형으로 조성	참조
정비기반시설 개선	C4, C5, C8, C10, C11	- 장군봉7길 6m → 11m 도로 확폭 - 썩고개로11길 6m → 11m 도로 확폭 - 도로는 양방 통행 차로 및 양측 보도로 확폭 조성	도면 참조
저층배치구간	C1, C2, C3, C4, C5, C6, C7, C8, C9, C10	- 장군봉 통경축 및 학교, 공원과 연계한 경관 형성을 위해 저층배치구간 지정 - 저층배치구간의 공동주택용지 내 주동은 7층 이하의 층수로 배치 권장	도면 참조
중층배치구간	C1, C2, C3, C7, C8, C11, C12, C13	- 주변계획과 조화를 위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중층배치구간 지정 - 중층배치구간의 공동주택용지 내 주동은 15층 이하의 층수로 배치 권장	도면 참조
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	C7, C8	- 배치구간 - 장군봉1길 - 기존 용도를 고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연도형으로 배치 권장	도면 참조

※ 자율정비구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관리계획 변경 필요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

3. 관련도면

○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4. 관계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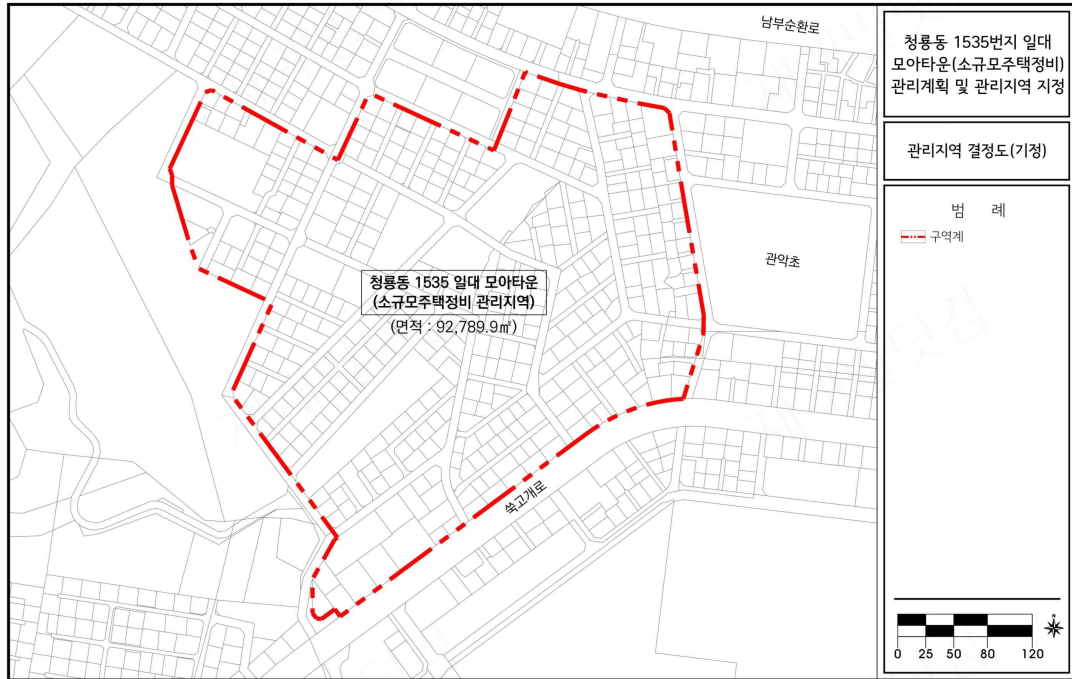
○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(☎ 02-2133-6281) 및 관악구 주택과(☎ 02-879-6454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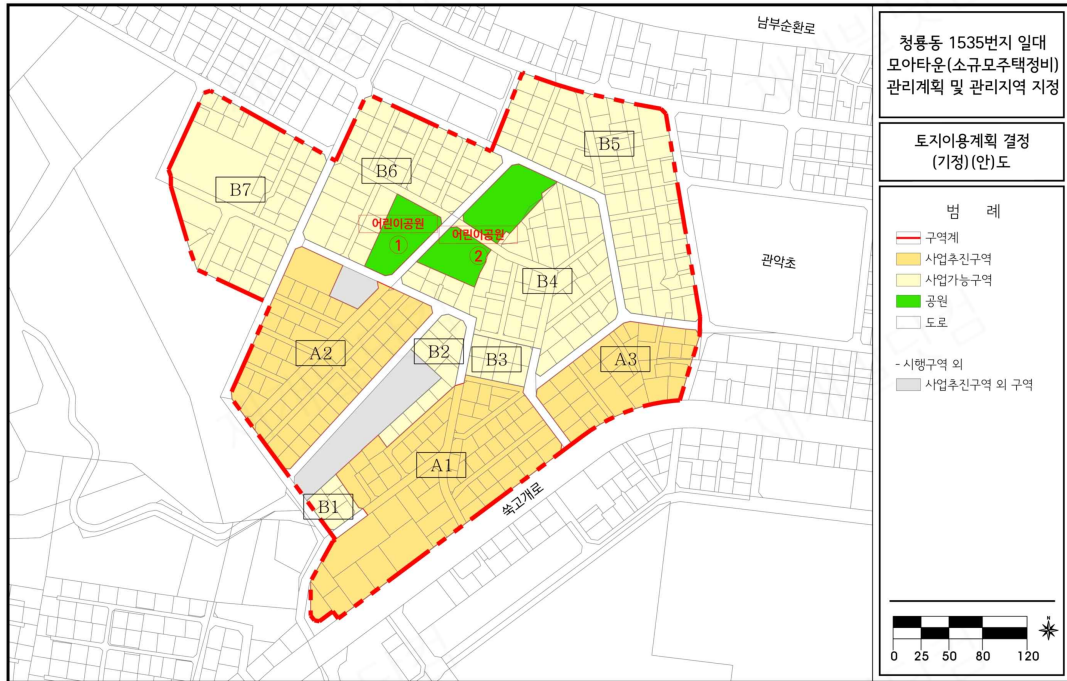
○ 관리지역 결정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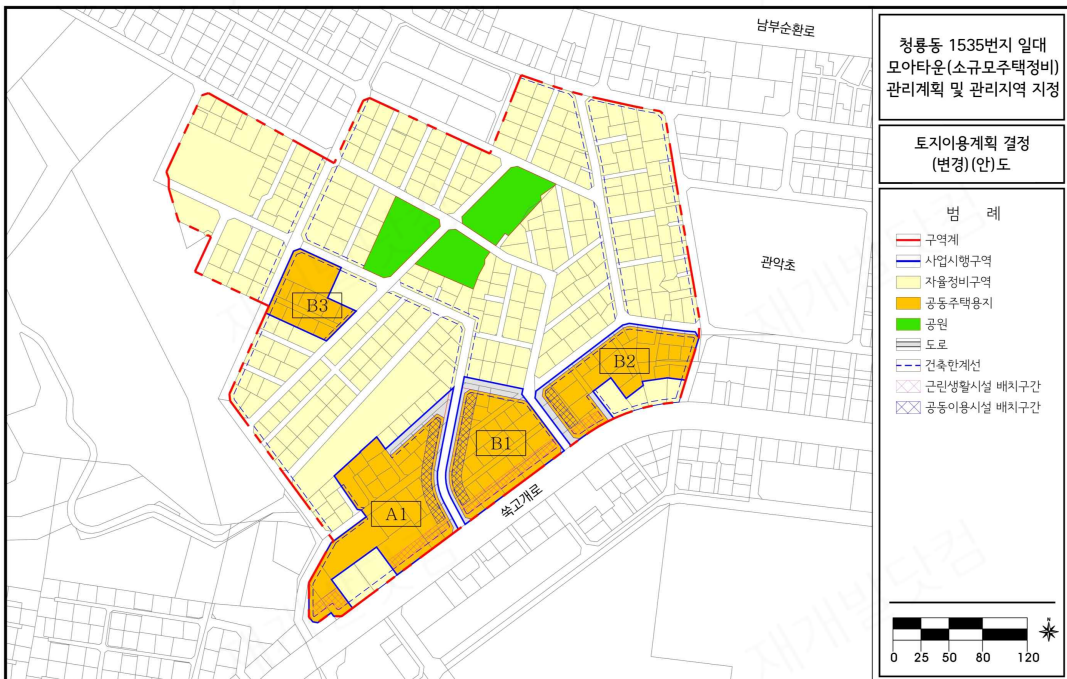
○ 관리지역 결정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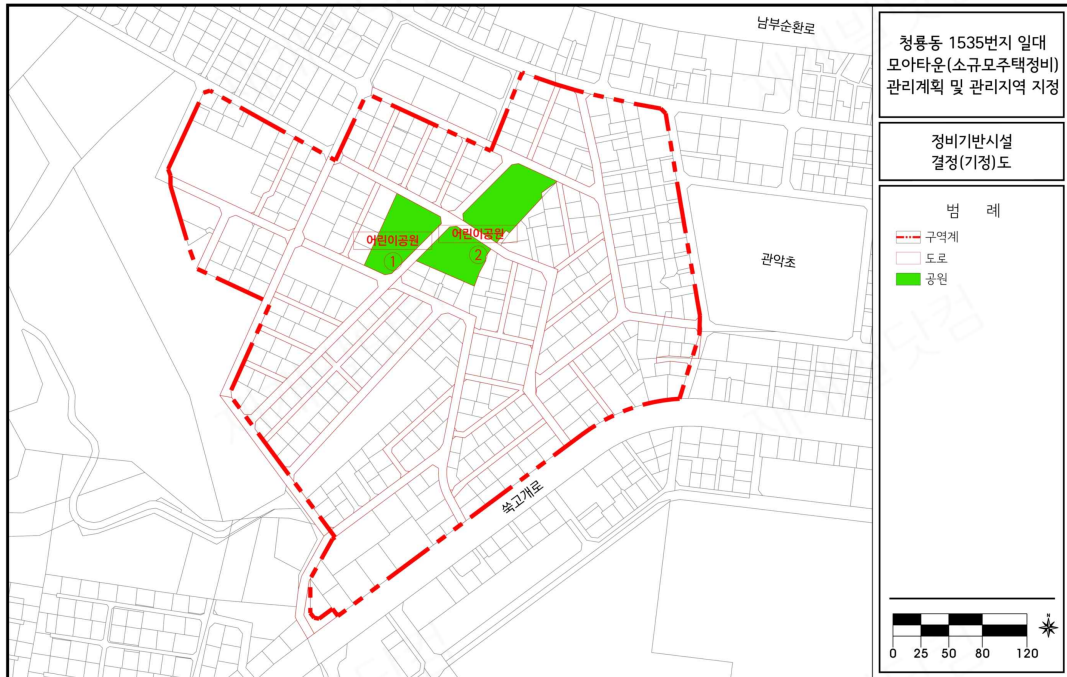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 결정(기정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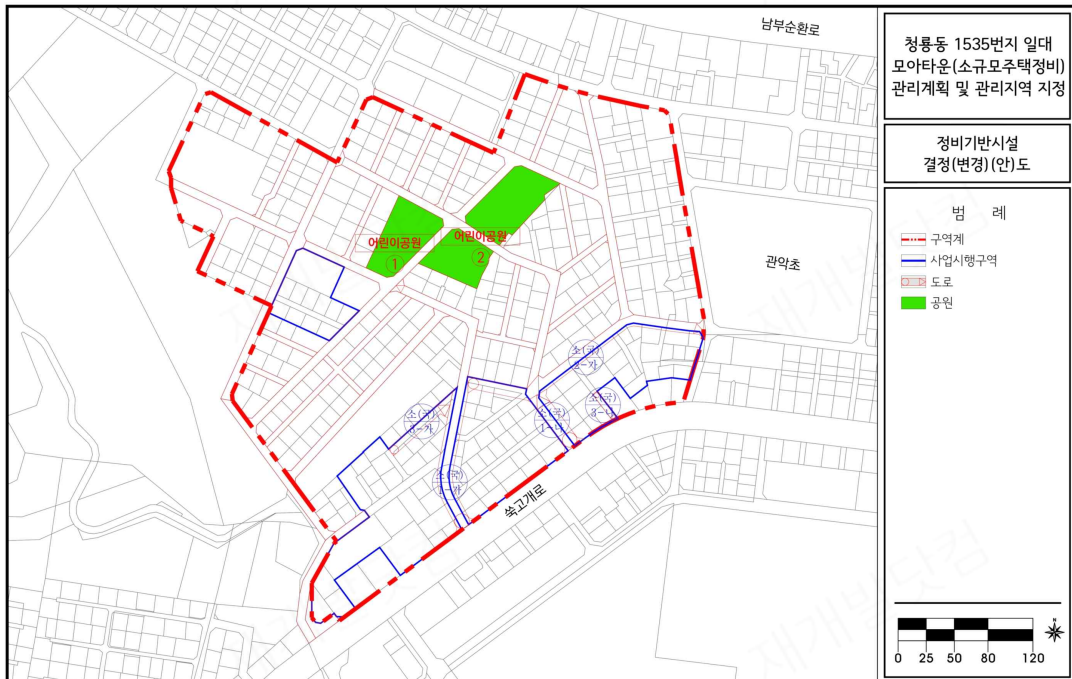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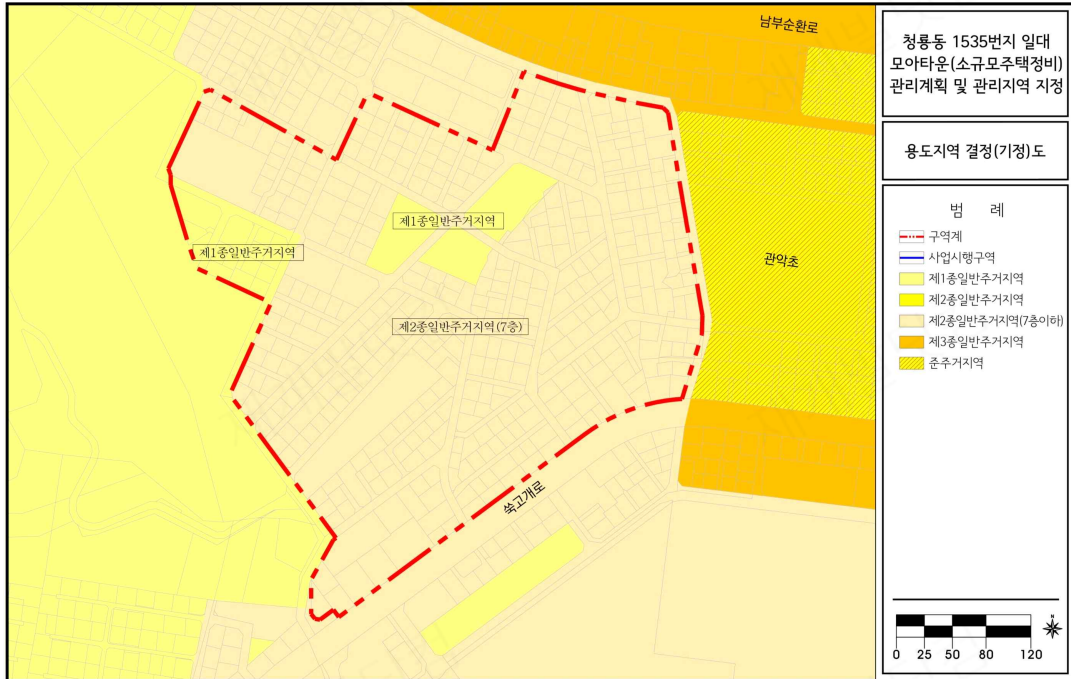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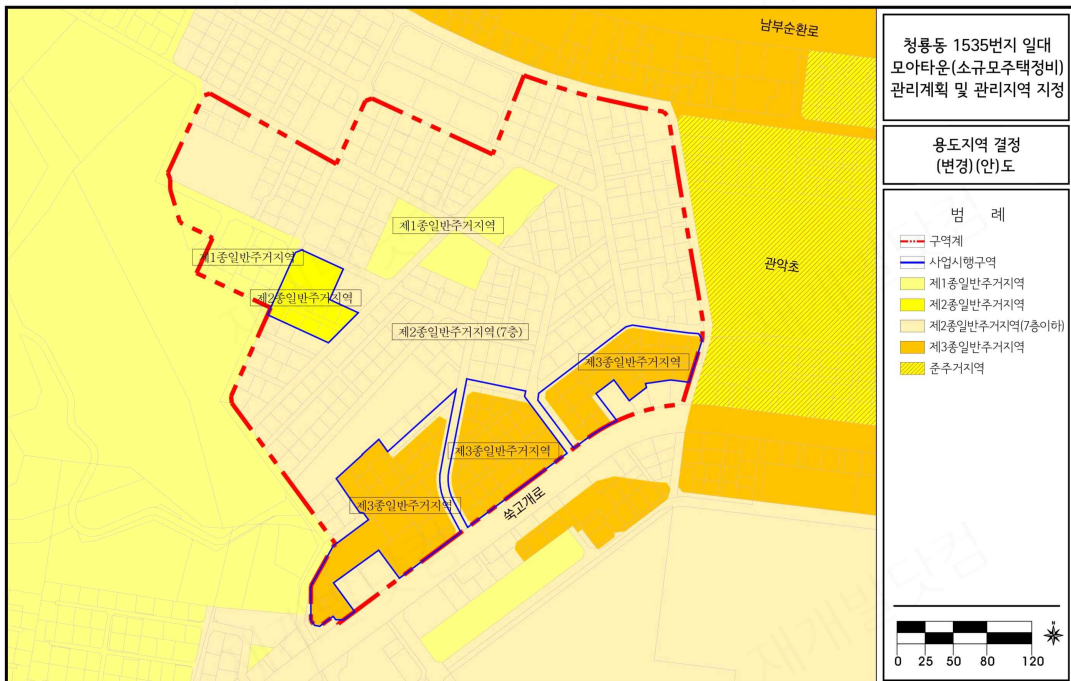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 결정(변경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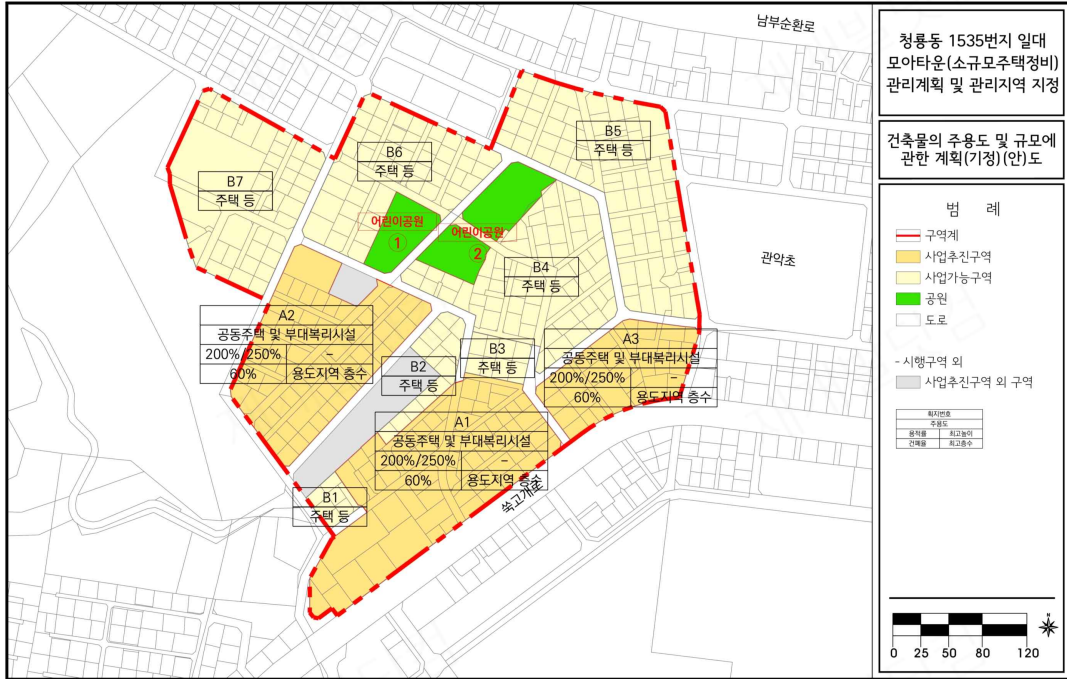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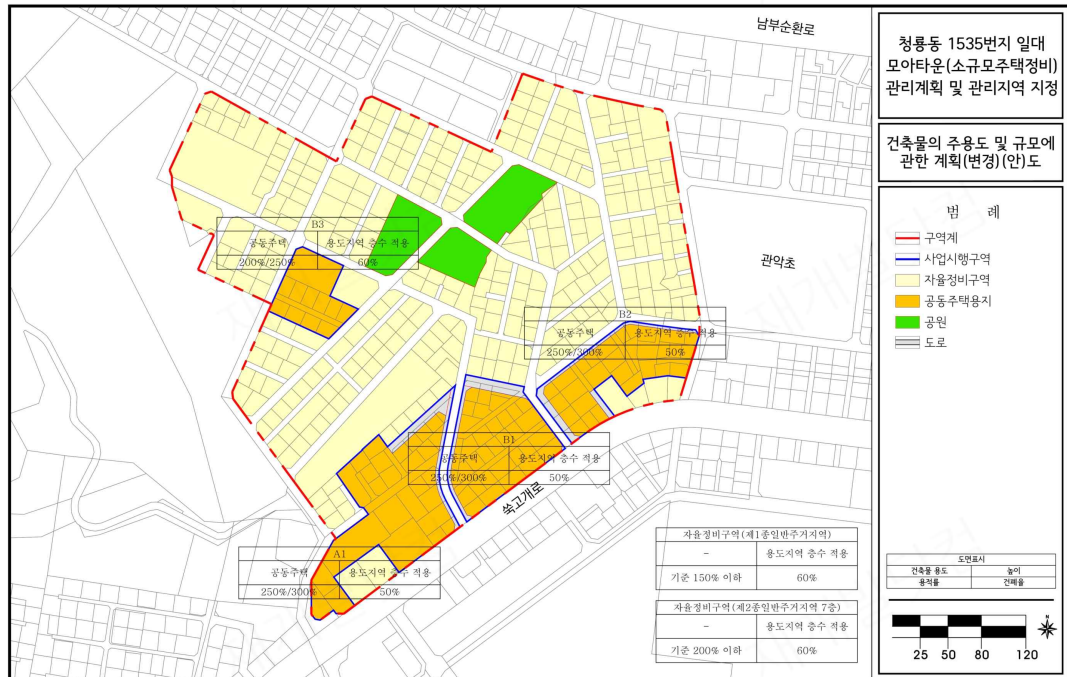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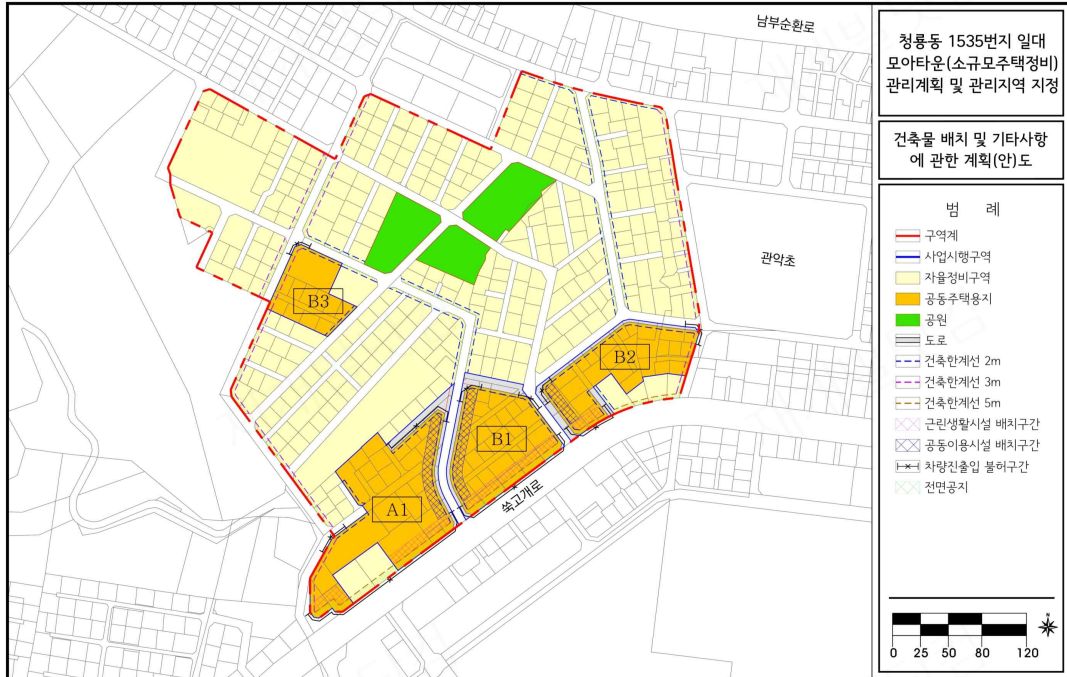
○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기정)(안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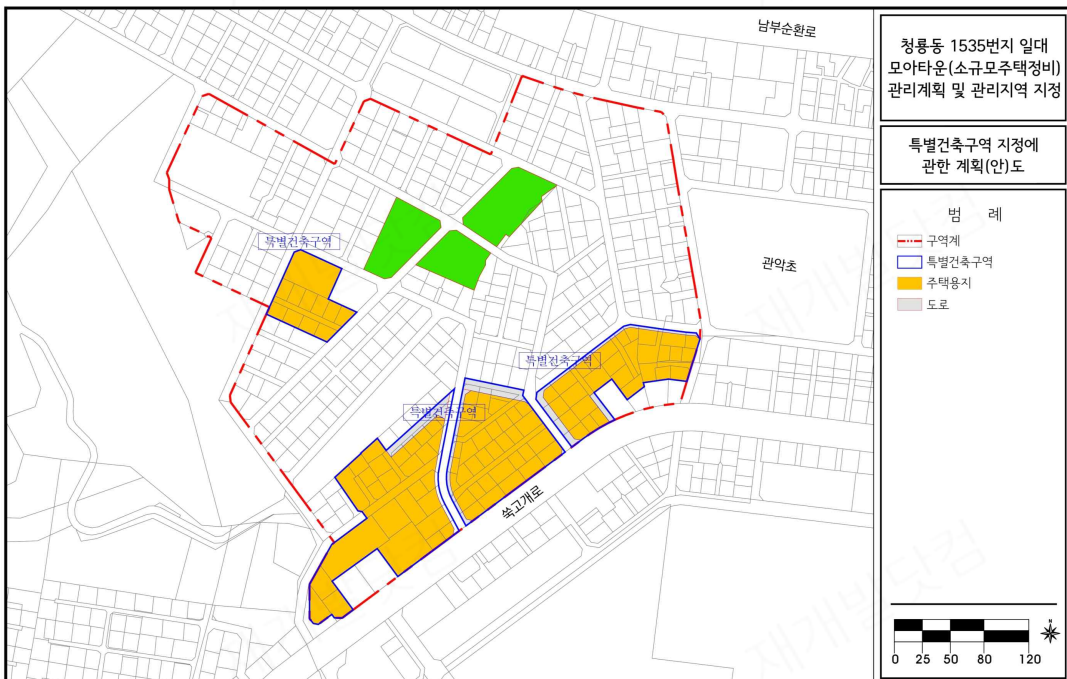
○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변경)(안)도



○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안)도



○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도



○ 자율정비구역에 관한 계획(안)_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

